

달드림 재가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1. 서비스 이용계약

기관은 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를 받고자 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 제공 전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①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 요양 인정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 요양등급 인정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하여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수급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계약기간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 계약서를 작성한다.
 -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 : 장기 요양 급여개시일부터 장기 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 요양 인정 갱신 신청에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나.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기관은 수급자에게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급자와 신원 인수인은 서비스 이용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인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 ① 기관은 수급자 관리 보호 및 수급자(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한다.
-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수급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나.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제40조 2항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받는 수급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 방법, 감경 절차 및 감경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라. 급여유형별 장기 요양 수가와 본인부담금

① 방문요양

구 분	1일 수가(원)	본인부담금(원)		
		15%	9%(감경60%)	6%(감경40%)
30분 이상	16,630	2,495	1,497	998
60분 이상	24,120	3,618	2,171	1,447
90분 이상	32,510	4,877	2,926	1,951
120분 이상	41,380	6,207	5,586	2,483
150분 이상	48,250	7,238	4,343	2,895
180분 이상	54,320	8,148	4,889	3,259
210분 이상	60,530	9,080	5,448	3,632
240분 이상	66,770	10,016	6,009	4,006

2024 보건복지부 개정 고시

② 방문목욕(60분 이상)

구 분		1일 수가 (원)	본인부담금(원)		
			15%	9%(감경60%))	6%(감경40%))
차량 이용	차량 내 목욕	84,670	12,701	7,620	5,080
	가정 내 목욕	76,340	11,451	6,871	4,580
차량 미이용		47,670	7,151	4,290	2,860

2024 보건복지부 개정 고시

* 서비스 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일 경우 해당 급여비용의 80% 산정한다.

③ 등급별 월 한도액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 * 급여 한도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하며, 한도 내에서 월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한다.
- *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 * 한도를 초과하였을 때는 초과 비용에 한하여 수급자가 전액 부담을 한다.

마. 수급자의 건강상의 문제 또는 보호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 한도 이상으로 추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에는 비급여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서비스 비용은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별도의 협의 계약으로 정한다.

3.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할 수 있으며, 수급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 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가. 신원 인수인의 권리

- ①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② 장기 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권리
- ④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할 권리
- ⑤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 인수인의 의무

- ① 수급자의 신병에 이상이 생기거나 인적 사항이 변경될 경우 즉시 통보할 의무
- ② 수급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③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성실하게 납부할 의무
- ④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 ⑤ 기타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운영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

4.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정될 경우

라. 장기 입원 등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 이상 서비스 공백이 생길 경우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바. 기관 내에서 기관 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사.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서비스 제공을 하기 어려운 경우

아. 3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수급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